

hEHS 위원회 규정

한미약품 주식회사

목 차

제 1 장 총칙

제1조 【목적】	1
----------	---

제 2 장 구성

제2조 【구성 및 선임】	1
제3조 【위원장】	1
제4조 【위원의 임기】	1

제 3 장 회의

제5조 【위원회】	2
제6조 【위원회의 소집】	2
제7조 【협의방법】	2
제8조 【협의사항】	3
제9조 【회의록】	3

제 5 장 기타사항

제10조 【기타 요구 등】	3
제11조 【통지의무】	3
제12조 【간사】	4
제13조 【경비】	4
제14조 【규정의 개폐】	4
〈 부칙 〉	4

제1장 총칙

제1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한미약품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EHS 효율화를 위해 구성된 hEHS위원회의 규정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산하에 위치하며 한미약품 EHS 체계화 및 효율화를 목적으로 환경, 안전, 보건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의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생산시설은 물론(팔탄공단, 평택공단, 한미정밀화학) 연구 및 사무시설(연구센터, 본사)를 포함한다.

제2장 구성

제2조 【구성 및 선임】

- ① 위원회는 한미약품 대표이사 및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분야, 에너지 등 환경분야, 이를 지원하는 부서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본위원회 과반수 결의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 【위원장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【위원의 임기】

위원의 임기는 최초 선임일로부터 2년까지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총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제3장 회의

제5조【위원회】

위원회는 반기 1회씩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 이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6조【위원회의 소집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회일 24시간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【협의방법】

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, 협의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

제8조【협의사항】

위원회에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사업장별 EHS 정량데이터 현황 파악 및 공유
- ② EHS관련 주요 이벤트 공유 및 리뷰
- ③ 법규제 등 기후 변화 및 대응 전략 모색
- ④ 대외기관 동향 및 대응체계 마련

제9조【회의록】

- 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기타사항

제10조【기타 요구 등】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필요 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11조【통지의무】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2조【간사】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위원회 결의에 의해 정해지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13조【경비】

- ①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4조【규정의 개폐】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이력

개정번호	개정이력	시행일자
1	EHS위원회 운영에 따른 최초 제정	2018. 12. 01
2	[제 1조] 환경, 안전, 보건 추가 [제 2조 1항]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[제 8조 3항] 기후변화 명칭 변경	2022. 10. 14